

『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하여,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 삭제(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22조, 안 제35조, 안 제37조, 안 제40조, 안 제65조, 안 제86조, 안 제94조)
-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의 변동 사항 보고기한 변경(안 제 16조, 안 제30조제2항)
 - 기존 3일 : 변경 10일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 상한 및 사용료 요율과 범위를 규정(안 제42조의2, 안 제62조, 안 제63조)
 - 중도매인간 거래 규모를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
- 시장관리 운영위원회, 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성비를 규정(안 제70조의2, 별표6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9조, 제31조, 제77조, 제78조의2, 제82조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, 제36조의2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, 제27조의2, 제39조, 제44조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규제완화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임의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